「평창군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❍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6년 9월 23일, 김진옥 의원 발의
- ❍ 회부일자: 2026년 10월 8일 회부
- ❍ 상정일자: 제31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(2026년 10월 13일 상정・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진옥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❍ 평창군 출산 가정의 백일해 감염을 예방하고 임산부와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❍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- ❍ 예방접종 지원계획의 수립・시행 및 지원대상(안 제3조 및 제4조)
- ❍ 백일해 예방접종의 실시, 비용 지원 및 지원 횟수(안 제5조)
- ❍ 예방접종 절차 및 업무의 위탁(안 제6조 및 제7조)
- ❍ 부정하게 지원받은 예방접종 비용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(안 제8조 및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경숙)

❍ 본 조례안은 평창군 출산 가정의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. 특히 지원 대상의 범위(임산부, 배우자, 부모 등)를 명확히 하고, 지원 계획 수립, 접종 비용 지원 및 위탁의료기관 운영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❍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서는 백일해를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지방자치단체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 따라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 제정은 감염병 예방 및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.

❍ 본 조례안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예방접종 제도를 평창군의 지역 여건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,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영유아의 안전한 성장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「회의록 참조」

5. 토론 요지:「회의록 참조」

6. 심사 결과: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「없음」